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5 · 18 민 주 화 운 동 진 상 규 명 을 위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방부장관 서욱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 사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록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과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원 중 다른 국가기관 파견공무원의 직급과 파견기관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원 중 다른 국가기관 파견공무원의 직급과 파견기관 일부를 조정(안 제2조제3항 및 별표 1)

- 1) 기록물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 간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사무관 1명을 행정안전부 소속 5급 또는 연구관 1명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소속 행정주사 1명을 행정안전부 소속 6급 1명으로 하며, 행정안전부 소속 사서주사·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2명 중 1명을 국가보훈처 소속 6급 1명으로 조정함.

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원 정원 중 다른 국가기관 파견공무원의 정원 표시를 현행 직급에서 계급으로 조정(안 제2조제

3항 및 별표 1)

- 1) 현행 “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 등 직렬과 계급을 모두 규정하던 방식에서 “5급 1명” 등 계급만 규정하여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직렬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최소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7. ~ 1.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은 국방부,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또는 연구사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1명(6급 1명)은 국가보훈처, 2명(5급 1명, 6급 1명)은 인사혁신처, 1명(6급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2명(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총계	72
정무직 계	3
위원장(장관급)	1
부위원장(사무처장 겸직) 및 상임위원(차관급)	2
별정직 계	53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1
4급 상당 별정직	5
5급 상당 별정직	17
6급 상당 별정직	17
7급 상당 별정직	13
일반직 계	14
4급	1
4급 또는 5급	1
5급 또는 연구관	6
6급 또는 연구사	6
경찰공무원 계	2
경감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② (생략) ③ 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2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기획재정부,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은 국방부, 4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사서주사·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2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2명(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은 국방부,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또는 연구사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1명(6급 1명)은 국가보훈처, 2명(5급 1명, 6급 1명)은 인사혁신처, 1명(6급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2명(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지원과	
연 락 처	(02) 724 - 9125